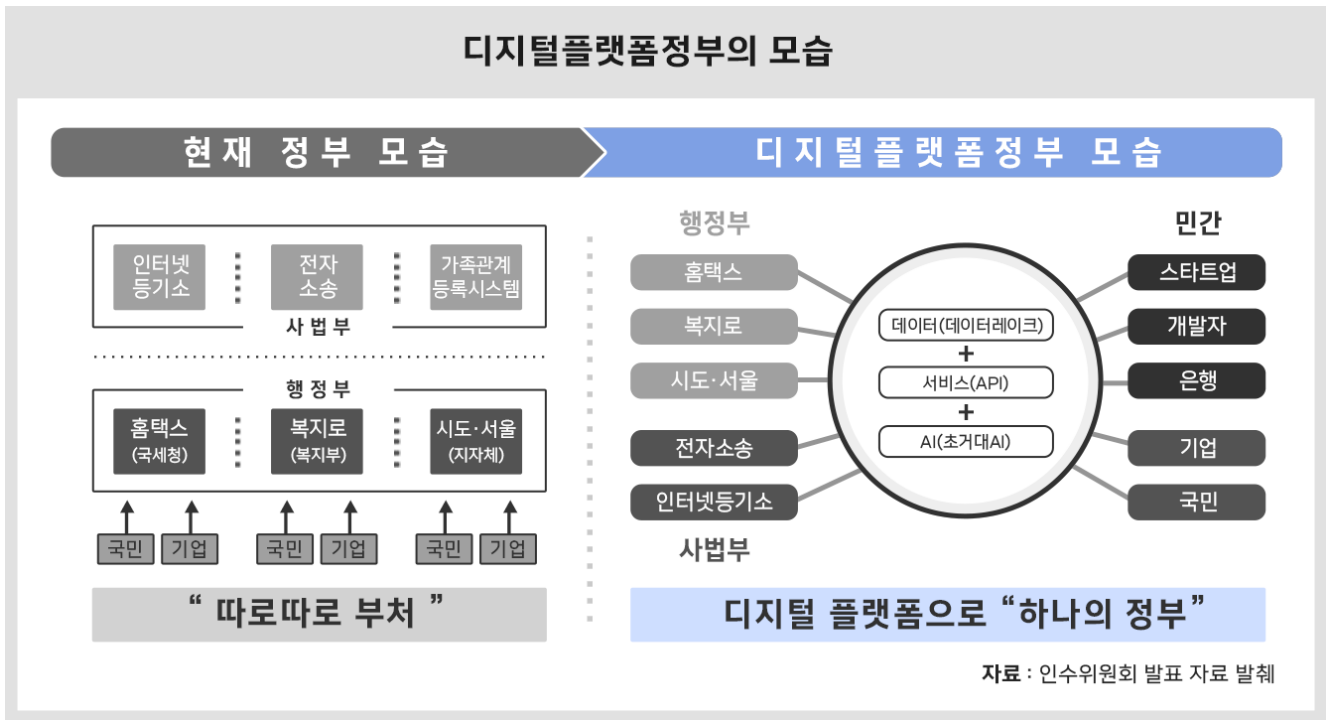


[인포그래픽] 금융정책과 금융감독·규제의 새로운 전환

전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 시기에 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 위에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가치를 내걸었다. 이와 함께 선진국에 안착하기 위한 필수요건인 선진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금융감독과 규제 분야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기 위한 정부와 업계의 재결음이 이어지고 있다.

>koscom NEWSROOM

INFOGRAPHIC
[금융 정책과 금융감독·규제 관련 자료 한눈에 보기]





디지털플랫폼정부 비전, 목표, 중점 추진과제

구분	내용	
비전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목표	편안한 국민, 혁신하는 기업, 과학적인 정부	
중점 추진 과제	1 국민과 기업이 단기에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추진	예시) 전자계약과 마이데이터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골목상권별 데이터 개방, 데이터 기반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2 누구나 쉽게, 한 곳에서,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먼저 찾아가는 공공서비스' 구현	예시) 범정부 데이터 공유·활용을 통한 맞춤형 공공서비스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환경(UI/UX) 조성 등
	3 관행과 경험에 의존해온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과학적 국정운영'으로 개편	예시) 데이터 기반 국정운영 확대 등
	4 정부가 데이터와 핵심기능을 플랫폼으로 제공하고, 민간이 창의적인 서비스를 창출하는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	예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마이데이터 확산, 공공정보화 사업 제도 개선 등
	5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 보장	예시) 망분리 및 클라우드 보안인증 제도개선, 데이터 유출방지, 보안사고 대응 강화 등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2. 7) 재정리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구상

 <p>선제적·맞춤형 서비스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사이트 토털서비스 개별 사이트 정보 서비스 연계·통합, 하나의 사이트에서 모든 서비스 신청·이용 마이(My) AI 서비스 인공지능으로 맞춤형 수혜 서비스 추천하고, 신청 없이도 선제적 제공 Any-ID 간편로그인 서비스 민간ID·모바일 신분증 등 로그인 수단 중 하나로 간편로그인
 <p>혁신생태계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관 협업으로 기업이 다양한 혁신서비스 창출 정보, 공공서비스·데이터 민간에 개방→기업, 혁신서비스 창출 →국민, 민간 앱에서 편리하게 공공서비스 이용
 <p>과학적 국정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 부처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 데이터 공유·연계·분석 공통기반 마련, 통합적 데이터 분석 통해 정책 의사결정
 <p>추진동력 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통령 소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 8월

자료 : 행정안전부(2022. 7. 26)

금융규제혁신 4대 분야, 9개 주요 과제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 금산분리 완화 등 통해 금융-비금융 간 융합 촉진
- 업무위탁 제도 개선 등 통해 빅테크 협력 및 신기술 활용 활성화
- 전업주의 규제 개선 등 통해 다양한 사업모델 허용

디지털 금융혁신 인프라 구축

-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등 신기술 활용 기반 혁신
- 가상자산,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 규율 체계 정비

자본시장 선진화

- 대체거래소 도입 등 자본시장 경쟁 촉진
-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제도 정비
- 기업의 회계, 감사, 상장 관련 부담 완화

감독 행정 개선

- 행정지도 및 감독, 제재, 검사 관행 개선

자료 : 금융위원회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 추진방향



해외 ICO 규제 유형과 주요 특징

금지형



중국

- 금융관련 법률 등에 근거하여 전면금지



대한민국

- 증권형은 자본시장법 적용으로 금지
- 비증권형은 행정 지도로써 금지

사안별 접근형

적극적
개입형



미국

- 증권규제의 적극적인 해석과 집행을 통해 무분별한 ICO 행위 제한
- '투자계약'에 대한 광의의 해석을 통해 가상통화나 토큰을 증권규제의 영역으로 포섭을 시도
- 투자계약으로 의심되는 ICO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하는 등 증권규제의 집행에 적극적
- 결과적으로, 금지형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규제실시

소극적
개입형



영국, 독일

- 기존 금융규제 적용의 한계로 인해 그 적용에 소극적



싱가포르

- 기존 금융규제 적용이 가능하나 정책적 측면에서 그 적용에 소극적



프랑스, 스위스,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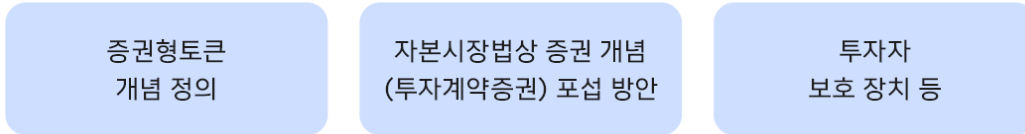
- 새로운 유형의 법규나 원칙 등의 제정을 통해 시장을 유치하려는 유형

자료 : 자본시장연구원(2018. 6.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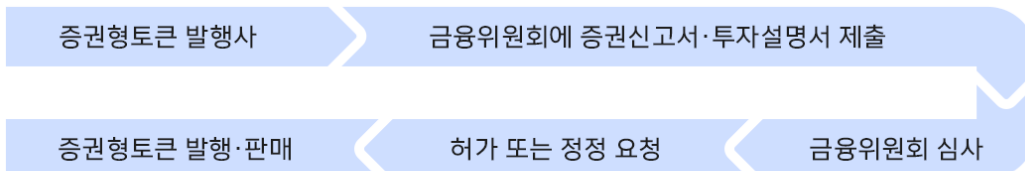
증권형토큰, 자본시장법 적용 의미



STO 자본시장법 적용 방안 검토 중인 금융당국



STO 방법(예상)



*모집 금액이 10억원 이상, 모집 대상이 50인 이상일 경우

자료 : 자본시장법, 매일경제(2021. 6. 28)

- * 저작권법에 의하여 해당 콘텐츠는 코스콤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 * 따라서, 해당 콘텐츠는 사전 동의없이 2차 가공 및 영리적인 이용을 금합니다.